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존에 운영되어 온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가 위원회 간 기능 및 운영 상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예방 분과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심의회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에 남녀평등교육 증진뿐만 아니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예방 관련 업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안 제2조 개정)
- 나.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5조의3 신설)
- 다. 분과위원장이 당해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하고, 회의의 구분에 정기회의, 임시회의뿐만 아니라 분과회의도 추가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개정)
- 라. 위원장뿐만 아니라 분과위원장도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개정)

4. 주요토의과제 :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대통령령 제 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남녀평등교육증진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추진목표 및 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호에서 제5호까지를 제2호에서 제6호까지로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8.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성과에 관한 분석,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

10. 각급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1.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민·관 연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제2조제6호를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 (분과위원회) ① 심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

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고,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③ 심의회 위원 중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 분과위원
회의 위원을 겸임 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그 심의사항을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
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회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제2항 중 “임시회의로”를 “임시회의, 분과회의로”로, “임시회의
는”을 “임시회의 및 분과회의는”으로, “소집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장”을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
으로 한다.

제7조 중 “위원장”을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전문
가”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능)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 -----.
<u>< 신 설 ></u>	<u>1. 남녀평등교육증진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추진목표 및 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u>
1. 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 육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 육과정·교수방법·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교원의 남녀평등교육의식 활 성화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 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 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진로·직업 관련 남녀평등의식 고취 및 남녀평등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방안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u>< 신 설 ></u>	<u>7.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u>
<u>< 신 설 ></u>	<u>8.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성과에 관한 분석,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u>< 신 설 ></u>	<u>9.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u>
<u>< 신 설 ></u>	<u>10. 각급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u>
<u>< 신 설 ></u>	<u>11.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민·관 연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u>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u>12. (현행 제6호와 같음)</u>
<u><신 설></u>	<u>제5조의3 (분과위원회)</u>
	<u>① 심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u>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고,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u>③ 심의회 위원 중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 할 수 있다.</u>
	<u>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그 심의사항을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u>
	<u>⑤ 분과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u>
	<u>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 (회의) ① ----- ----- 회의 -----.

현행	개정안
<후단 신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u>임시회의</u>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로 하고, <u>임시회의</u>는 필요에 따라 수시 <u>소집한다</u>.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7조 (의견청취) <u>위원장</u>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관계전문가</u>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u>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② ----- <u>임시회의</u>, <u>분과회의</u>로 ----- ----- <u>임시회의</u> 및 <u>분과회의</u>는 ----- <u>소집할 수 있다.</u> ③ <u>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u>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 (의견청취) <u>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u> ----- ----- <u>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u>를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연락처	(044) 203 - 7115